

【 주간이슈 】

미국 예금보험료를 차등화제도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

최형선 부연구위원

- 지난 4월 13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 이사회는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차등보험료를 개선안을 승인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
 - 미국 FDIC는 1991년 세계 최초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.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·복합금융회사의 리스크 차등화를 강화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이들의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제도를 개선
- 동 개선안은 위험 I 등급 내 부보금융회사를 총자산 1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대형·복합금융회사와 소형금융회사로 구분하고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정
 -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대형·복합금융회사를 기존의 위험등급 체계가 아닌 스코어카드를 통해 평가
 - 스코어카드의 평가항목은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위험과 위험대응력을 평가하는 성과점수와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손실률점수로 구성
- 우리나라도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예금보험료를 차등화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
 - 동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예금보험료를 소폭으로 유지하면서 평가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미국과 같이 차등 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
 - 우리나라의 예금보험료를 차등화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은행을 비롯하여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만큼 금융권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제도 확립에 대한 준비가 필수

1. 논의 배경

- 지난 4월 13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: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) 이사회는 대형·복합금융회사(Large or Highly Complex Institution)에 대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의 개선안을 승인
 - FDIC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차등화를 강화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이들의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개선
 - 동 개선안은 규정화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
-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란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통해 각 회사에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
 - 국제예금보험기구(IADI: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)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OECD 12개국을 포함하여 32개 국가가 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
 - 미국이 1991년 가장 먼저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도입한 이후 캐나다, 멕시코, 핀란드, 프랑스, 그리스, 헝가리, 이태리, 룩셈부르크, 노르웨이, 폴란드, 포르투갈, 스위스, 터키 등이 연이어 채택
 -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체계의 개편,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와 건전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
 - 우리나라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
- 본고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의 제도적 특징과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여 동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.

2. 미국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

가. 도입배경 및 발전단계

- 미국 FDIC는 1980년대 초에 발생한 저축대부조합(savings and loan association)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최초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도입
 -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 실패로 발생한 저축대부조합 위기는 연방 저축대부보험공사(FSLIC: 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)의 파산을 초래
 - 미국 정책당국은 금융시장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989년 금융기관 개혁 및 규제 강화법(FIRREA: Financial Institution's Reform, Recovery, and Enforcement Act)과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(FDICIA: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of 1991)을 제정
 - 특히 FDICIA는 과도한 위험 추구행위를 하는 은행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(risk-based deposit insurance premiums)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동 제도는 1993년 처음으로 시행

- 미국은 2006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의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연방예금보험개혁법(FDIRA: Federal Deposit Insurance Reform Act of 2005)을 제정
 - FDIRA의 내용은 은행보험기금과 저축조합보험기금의 통합, 보호한도의 주기적 조정제도 도입, 목표적립률 설정 및 보험료 부과규정 개정, 보험료 공제 및 배당 실시 등으로 구성

-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난 2010년 4월 미국의 FDIC는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체계를 전면 수정한 개선안을 제시¹⁾
 - FDIC는 대형·복합금융회사가 파산 시 예금보험기금에 중소형 금융회사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등화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기술

- 나. 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의 체계

- 미국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는 은행에만 적용되고 차등보험료율은 기준보험료율에 조정요인을 적용하여 산정

1) FDIC Board Meeting,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Assessments, FDIC, 2010.4.23.

□ 먼저 기준보험료율은 개별 은행의 자본등급(capital level)과 감독등급(supervisory level)에 따라 정해진 위험등급(risk category)에 따라 산정됨.

<표 1> 위험등급 분류

자본등급	감독등급		
	A	B	C
1. 충분자본(Well Capitalized)	I	II	III
2. 적정자본(Adequately Capitalized)	II	II	III
3. 부족자본(Undercapitalized)	III	III	IV

자료: FDIC "Assessments: Final Rule", Federal Register, Vol 74, No. 41, 2009.3.

- 자본등급은 충분자본(Well Capitalized), 적정자본(Adequately Capitalized), 부족자본(Undercapitalized) 등 3개 그룹으로 분류
 - 충분자본(Well Capitalized)이란 위험가중총자본비율(총자기자본/위험가중자산, Total risk-based ratio) 10% 이상, 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(기본자기자본/위험가중자산, Tier 1 risk-based ratio) 6% 이상, 총자산기본자본비율(기본자기자본/총자산, Tier 1 leverage ratio) 5% 이상인 경우
 - 적정자본(Adequately Capitalized)은 각각 4% 이상, 4% 이상, 8% 이상인 경우
 - 부족자본(Undercapitalized)은 충분자본(Well Capitalized)과 적정자본(Adequately Capitalized)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
- 감독등급은 CAMELS(Capital, Asset Quality, Management, Earnings, Liquidity, and Sensitivity)의 가중평균으로 A등급, B등급, C등급 등으로 분류
 - A등급은 CAMELS의 1,2등급, B등급은 CAMELS의 3등급, C등급은 CAMELS의 4,5등급을 의미
- 위험등급에 따라 위험 I 등급 부보금융회사에게는 12~16bp, 위험 II 등급은 22bp, 위험 III 등급은 32bp, 위험 IV 등급은 45bp 등의 기준보험료율이 적용됨.

<표 2> 위험등급에 따른 기준보험료율

구 분	I 등급		II 등급	III 등급	IV 등급
	최저	최대			
연간요율(annual base point)	12	16	22	32	45

자료: FDIC "Assessments: Final Rule", Federal Register, Vol 74, No. 41, 2009.3.

□ 다음으로 위험등급에 따라 산정된 기준보험료율에 무담보채무(unsecured debt), 담보부채(secured liability), 중개예금(brokered deposit) 등 3가지 조정 (adjustment)요인이 반영되어 차등보험료율이 산정됨.

- 5년 이상 된 부보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은 위험 I 등급은 7~24bp, 위험 II 등급은 17~43bp, 위험 III 등급은 27~58bp, 위험 IV 등급은 40~77.5bp임.

<표 3> 5년 이상 된 부보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 체계

(단위: 연간요율)

구 분		I 등급	II 등급	III 등급	IV 등급
기준보험료율		12 ~ 16	22	32	45
조정 요인	무담보채무	△5 ~ 0	△5 ~ 0	△5 ~ 0	△5 ~ 0
	담보부채	0 ~ 8	0 ~ 11	0 ~ 16	0 ~ 22.5
	중개예금	-	0 ~ 10	0 ~ 10	0 ~ 10
적용보험료율		7 ~ 24	17 ~ 43	27 ~ 58	40 ~ 77.5

자료: FDIC "Assessments: Final Rule", Federal Register, Vol 74, No. 41, 2009.3.

- 5년 미만의 신규 부보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은 위험 I 등급은 16~24bp, 위험 II 등급은 22~43bp, 위험 III 등급은 32~58bp, 위험 IV 등급은 45~77.5bp임.
- 5년 미만의 신규 부보금융회사의 경우 무담보채무가 조정요인에서 제외됨.

<표 4> 5년 미만의 신규 부보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 체계

(단위: 연간요율)

구 분		I 등급	II 등급	III 등급	IV 등급
기준보험료율		12 ~ 16	22	32	45
조정 요인	담보부채	0 ~ 8	0 ~ 11	0 ~ 16	0 ~ 22.5
	중개예금	-	0 ~ 10	0 ~ 10	0 ~ 10
적용보험료율		16 ~ 24	22 ~ 43	32 ~ 58	45 ~ 77.5

자료: FDIC "Assessments: Final Rule", Federal Register, Vol 74, No. 41, 2009.3.

- 부보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율 차등 폭은 1993년 제도 도입 시 8bp였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 2010년 현재 등급 내 최대 37.5bp를 기록

□ FDIC는 별도의 규정 없이 부보금융회사의 적용 예금보험료율을 분기당 3bp이상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없고 누적 인상 또는 인하 폭도 3bp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.

□ 차등보험료를 산정을 위해 FDIC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하며 해당 금융회사는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시할 수 없음.

○ 부보금융회사는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

3. 2010년 대형·복합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개선안

□ 2010년 4월 13일 FDIC 이사회가 승인한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개선안은 위험 I 등급 내 부보금융회사를 총자산 1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대형·복합금융회사와 소형금융회사(Small Institution)로 구분²⁾

○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대형·복합금융회사를 기존의 위험등급 체계가 아닌 스코어카드(scorecard)³⁾를 통해 평가

- 스코어카드의 평가항목은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위험과 위험대응력을 평가하는 성과점수(performance score)와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손실률점수(potential loss severity score)로 구성

<표 5>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변경내역

구분	현행		개선안
위험등급	I ~ IV등급	⇒	폐지
I 등급	신용평가등급	⇒	삭제
	CAMELS등급 재무비율 평가결과	⇒	
II ~ IV등급	자본등급 감독등급	⇒	스코어카드 (성과점수, 손실률 점수)

자료: 예금보험공사, 「미 FDIC 이사회, 차등보험료제도 개정안 승인」, 『KDIC 해외예금보험동향』, 2010.4.

○ 스코어카드를 통해 평가된 대형·복합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은 5~85bp로 기존의 7~77.5bp보다 그 차등 폭이 확대

2) FDIC, "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on Assessments", 2010.4.

3) 스코어카드는 <별첨> 참고

<표 6>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변경내역

(단위: annual base point)

구 분		대형·복합금융회사
기준보험료율		10 ~ 50
조 정 요 인	무담보채무	-5 ~ 0
	담보부채	0 ~ 25
	중개예금	0 ~ 10
적용보험료율	현행	7 ~ 77.5
	개정 후	5 ~ 85

자료 : FDIC, "Assessments: Proposed Rules", Federal Register, Vol 75, No. 84, 2010.5.

예금보험공사, 「미 FDIC 이사회, 차등보험료제도 개정안 승인」, 『KDIC 해외예금보험동향』, 2010.4.

- 총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소형금융회사와 외은지점(Insured Branches of Foreign Banks)은 위험등급을 통한 예금보험료율 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만 변경

<표 7> 소형금융회사 및 외은지점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변경내역

(단위: annual base point)

구 분		I 등급	II 등급	III 등급	IV 등급
기준보험료율		10 ~ 14	22	34	50
조 정 요 인	무담보채무	-5 ~ 0	-5 ~ 0	-5 ~ 0	-5 ~ 0
	담보부채	0 ~ 7	0 ~ 11	0 ~ 17	0 ~ 25
	중개예금	-	0 ~ 10	0 ~ 10	0 ~ 10
적용보험료율		5 ~ 21	17 ~ 43	29 ~ 61	45 ~ 85

자료 : FDIC, "Assessments: Proposed Rules", Federal Register, Vol 75, No. 84, 2010.5.

- 미국의 차등보험료율은 자본등급과 감독등급 요소를 절충한 혼합기준(hybrid criteria)으로 설정되고 있고 차등 폭은 동 제도 도입 이후 점차 확대
- 부보금융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도 개정을 통해 점차 세분화 되고 있음.

<표 8> 미국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

구 분	미국 FDIC
연 혁	• '91년 법제화, '93년 시행
차등등급	• 4등급(0.02%~0.4%)
차등 폭	• 8bp('93도입 시) → 27bp('95,9월) → 37.5bp('07.1월 이후)
평 가	• 자본적정성과 감독등급 2개 지표로 1~4 등급 구분
지 표	• 1등급 중 100억불 미만인 경우 - 자본적정성(1), 자산건전성(3), 수익성(1) 부문의 5개 재무지표와 감독등급으로 구분 • 1등급 중 100억불 이상인 경우 - 감독등급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구분
평가주기	• 반기
자료확보	• 업무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모두 전산으로 입수
보안유지	• 비밀유지의무 부과

자료: FDIC, "Assessments: Proposed Rules", Federal Register, Vol 75, No. 84, 2010.5.

예금보험공사 『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』 용역 결과, 2007.5.

4.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

□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, 보험, 금융투자 등 금융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로는 차등 적용되고 있지 않음.

○ 예금보험 보호대상인 부보금융회사는 은행, 보험회사(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), 증권(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), 종합금융회사, 상호저축은행 등이고 업권별로 각각 0.08%, 0.15%, 0.15%, 0.15%, 0.35% 등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음.

<표 9>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변동현황

(단위: %)

구 분	은행	보험	증권	종금	저축은행
1997.11이전	0.02	0.10	0.10	0.08	0.15
1997.11 ~ 1998.7	0.03	0.15	0.15	0.12	0.15
1998. 8 ~ 2000.7	0.05	0.15	0.10	0.15	0.15
2000. 8 ~ 2009. 5	0.10	0.30	0.20	0.30	0.30
2009. 6 ~ 현재	0.08	0.15	0.15	0.15	0.35
2003. 1 ~ 현재	특별기여금 0.10 추가				

주: 보험권의 예금보험료율 부과대상은 1998.10.9 이전 수입보험료, 1998.10.10 ~ 2000.8.4 책임준비금, 2000.8.5 이후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

자료: 『예금자보호법』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, 예금보험공사

- 그러나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위험과 경영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상이하게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
 -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공정한 예금보험료율 부과를 위해 2009년 2월 3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와 제24조의3에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를 5년 이내에 실시하기로 명시
 -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12월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판단
 -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해외사례는 전무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.

-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 시행 초기에는 차등보험료율을 소폭으로 유지하면서 평가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미국과 같이 차등 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대형·복합금융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
 - 과도한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화는 경영상태가 취약한 부보금융회사에게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할 수 있고 제도 도입 초기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화가 가속화되어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.

- 또한 부보금융회사의 자료 확보 방법과 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.

- 우리나라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은행을 비롯하여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만큼 금융권별 특징을 반영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준비가 필수
 - 전통적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부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은행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인출쇄도(bank run)를 막기 위하여 도입됨.
 - 그러나 보험계약은 은행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주요기능이므로 보험계약의 연속성만 보장된다면 은행과 같은 인출쇄도(insurance run)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음.
 - 최근 들어 위험보장기능에 저축성기능이 가미된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

여전히 위험보장기능이 보험계약의 주요기능

- 따라서 차등보험료율 산정 시 금융권별 상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회사별 차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□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가 시행될 경우 요구될 수 있는 평가항목 (자본등급, 감독등급)에 대한 준비가 필요

- 재무위험이 높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부보금융회사가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은 만큼 금융회사의 적절한 재무위험과 경영상태 관리가 필요
- 특히 미국이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별도의 차등보험료율 기준을 마련한 만큼 우리나라의 대형금융회사도 향후 시행될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 KiRi

<별첨>

<표 10> 대형금융회사의 스코어카드

구분(가중치)	스코어카드 지표(가중치)	점 수
CAMELS(30%)	가중평균 CAMELS	25~100점
자산관련 위기 대응력 (50%)	보통주 중심의 기본자본 비율(15%) (Tier 1 Common Capital Ratio)	0~100점
	편중도 지표(35%) - '고위험자산 편중도' 또는 '성장위주자산 편중도' 중 높은 값	0~100점
	총자산(평잔)대비 핵심이익(15%)	0~100점
	여신건전성 지표(35%) - '(기본자본+총당금)대비 요주의이하여신' 또는 '(기본자본+총당금)대비 저수익성자산' 중 높은 값	0~100점
	소 계(100%)	0~100점
	가산 지표(outlier add-ons)	
	'(기본자본 +총당금)대비 요주의이하여신' 또는 '(기본자본 +총당금)대 비 저수익성자산' 중 높은 값	30점
	고위험자산 편중도 지표	30점
	자산관련위기대응력 합계	0~160점
	자금조달 관련 위기대응력 (20%)	총부채대비 핵심예금(핵심예금비율)(40%)
총자산대비 미사용 대출한도(unfunded commitments)(40%)		0~100점
단기부채대비 유동자산(유동성커버리지비율)(20%)		0~100점
자금조달관련위기대응력 합계(100%)		0~100점
성과 총점(Total performance score)		0~100점
잠재 손실률	국내총예금대비 기금예상손실(기금예상손실률)(50%)	0~100점
	국내총예금대비 담보부채(담보부채비율)(50%)	0~100점
잠재손실률 총점(Total loss severity score)		0~100점

자료: FDIC(2010), 예금보험공사(2010)

<표 11> 복합금융회사의 스코어카드

구분(가중치)	스코어카드 지표(가중치)	점 수
CAMELS(20%)	가중평균 CAMELS	25~100점
시장지표 (10%)	선순위채권 스프레드	0~100점
	가산 지표(outlier add-ons)	
	모회사 TCE 비율	30점
	시장지표 합계	0~130점
자산관련 위기 대응력 (50%)	보통주 중심의 기본자본 비율(10%) (Tier 1 Common Capital Ratio)	0~100점
	편중도 지표(35%) - '고위험자산 편중도' 또는 '성장위주자산 편중도' 중 높은 값	0~100점
	총자산(평잔)대비 핵심이익(10%)	0~100점
	여신건전성 지표(35%) - '(기본자본+총당금)대비 요주의이하여신' 또는 '(기본자본+총당금)대비 저수익성자산' 중 높은 값	0~100점
	기본자본대비 10일 99% VaR 비율(10-day 99% VaR/Tier 1 Capital)	0~100점
	소 계(100%)	0~100점
	가산 지표(outlier add-ons)	
	'(기본자본 +총당금)대비 요주의이하여신' 또는 '(기본자본 +총당금) 대비 저수익성자산' 중 높은 값	30점
	고위험자산 편중도 지표	30점
	자산관련위기대응력 합계	0~160점
자금조달 관련 위기대응력 (20%)	총부채대비 핵심예금(핵심예금비율)(30%)	0~100점
	총자산대비 미사용 대출한도(unfunded commitments)(30%)	0~100점
	단기부채대비 유동자산(유동성커버리지비율)(20%)	0~100점
	총자산대비 단기차입 비율(20%)	0~100점
	소계(100%)	0~100점
	가산 지표(outlier add-ons)	
	총자산대비 단기차입 비율	30점
자금조달관련위기대응력 합계(100%)	0~130점	
성과 총점(Total performance score)		0~100점
잠재 손실률	국내총예금대비 기금예상손실(기금예상손실률)(50%)	0~100점
	국내총예금대비 담보부채(담보부채비율)(50%)	0~100점
잠재손실률 총점(Total loss severity score)		0~100점

자료: FDIC(2010), 예금보험공사(2010)